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권장하는 관광산업발전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대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신청과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 위생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2조)
- 위원회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제60조(조합의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7조(위생교육), 제19조(국고보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참고자료 :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규제개혁 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과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 위생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